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451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9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지정 및 운영”을 “지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한”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지정 및 운영”을 “지정·운영, 지정취소·업무정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각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 다. 행정처분 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한다.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에 대하여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정지 기간을 단축하고,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감경한다.
- 1) 국민보건, 의료인력관리,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3) 해당 기관이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 4) 업무정지 혹은 지정취소 처분이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취소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차수별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7조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4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4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② (생략) <신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u>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정·운영 등) ①·② (생략) ③ <u>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u> ④ ----- <u>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u> ----- -----. ⑤ (생략) ⑥ ----- <u>제5항</u> ----- 지정·운영, 지정취소·업무정지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의료인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2431/2433